

포스 포 굿(Force for Good)후원회 회칙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본 후원회는 뉴스킨 코리아(주)의 사업자들(이하'사업자'라 한다)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, '사업자'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주요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실시하여 그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)

본 후원회의 명칭은 "포스 포 굿 후원회(약칭'FFG 후원회)"라 한다.

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본 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86 길 6 에 둔다.

제 4 조 (사업의 종류)

본 후원회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아동사업
2. 문화사업
3. 교육사업
4. 의료사업
5. 생활 복지사업
6. 그 밖에 본 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재산 및 회계

제 1 절 재 산

제 5 조 (후원금 조성)

④ 본 후원회의 후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후원회에 가입한 사업자가 기탁 또는 후원한 현금, 주식, 유가증권, 기타 귀중품
2. 전 호의 후원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② 후원금의 조성을 위하여 본 후원회에 가입한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후원금을 납부한다.

1. 포스 포 굿 베스트 클럽

뉴스킨 코리아(주)의 디스트리뷰터 팀 엘리트의 자격으로 매월 디스트리뷰터 후원수당의 1% 나눔 후원 또는 50 만원 이상 약정 금액만큼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계좌로 자동 기부

2. 1% 나눔 후원

매월 디스트리뷰터 후원수당의 1%에 해당하는 금액(1 만원미만 절사)을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계좌로 자동 기부

3. 일반 정액 후원

매월 디스트리뷰터 후원수당에서 후원 신청 약정 금액만큼 뉴스킨 포스 포 굿 계좌로 자동 기부

제 6 조 (후원금의 관리)

④ 후원회는 후원금 관리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익명으로 후원금을 기탁 또는 후원하여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성명 등은 기재하지 아니한다.

1. 후원금을 접수한 일시 금액 및 모금에 참여한 자의 성명 주소
2. 후원금 지출의 일시 금액 및 목적
3. 기타 후원금 운용에 따른 과실수익이 발생한 일시 금액

② 후원회는 상임위원회 결의에 의해 조성된 후원금의 관리를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 7 조 (후원금의 사용)

- ① 본 회칙 제 5 조에 의하여 조성된 후원금은 본 회칙 제 4 조에 기재된 사업에 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후원회의 수익은 후원회 회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분배하지 아니한다.

제 2 절 회 계

제 8 조 (회계년도)

본 후원회의 회계연도는 '뉴스킨 코리아(주)'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9 조 (사업계획 및 예산)

본 후원회의 운영기구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 월 이내에 그 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의결을 요청하여야 하며,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이를 의결한다.

제 10 조 (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)

본 후원회 운영기구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 월이내에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을 작성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의결을 요청하여야 하며,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이를 의결한다.

제 11 조 (잉여금의 처리)

본 후원회의 매 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)

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 3 장 회 원

제 13 조 (자격)

회원이란 본 후원회의 회칙 등에 동의하고, 소정의 회원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

제 14 조 (회원가입)

- ① 후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 및 후원약정서를 작성하여, 본 후원회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② 회원의 가입절차는 본 후원회의 규정에 의한다.

제 15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- ① 회원은 아래의 사항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이 있다.
 1. 최초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권
 2.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
 3. 후원회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의결권
-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에 기재된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 등을 제한한다.
 1. 회원으로서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
 2. 본 후원회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
- ③ 회원은 본 후원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④ 회원은 본 회칙 제 5 조 제 2 항에 따른 후원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본 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회원의 탈회 및 제명)

- ① 탈회를 원하는 회원은 탈회원을 제출하고 본 후원회를 탈회할 수 있다.

② 상임위원회는 회칙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후원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후원회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(제명 등)처분을 할 수 있다.

③ 자진탈퇴 하거나 제명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기 납부한 회비 등 기타 자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 4 장 상임위원회

제 17 조 (상임위원회의 구성)

본 후원회를 대표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며, 그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 5 인이상 9인이하 구성된다.

제 18 조 (상임위원의 선임)

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의 추천자 및 상임위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회원 중 자발적 신청자 중 선출한다.

(FFG 후원회 회원의 투표에 의하여 다수 득표를 획득하여 선출된 5 인이상 9 인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.)

제 19 조 (상임위원 선임의 제한)

본 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
(단, 상임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)

제 20 조 (상임위원의 임기 등)

① 본 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상임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익년 2 월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, 임기가 만료되는 운영 위원회 후임자는 임기만료 1 월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.

제 21 조 (상임위원의 결격사유)

④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본 후원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7. 제 5 호 및 제 6 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「아동복지법」 제 71 조 또는 「형법」 제 28 장 제 40 장(제 360 조는 제외한다)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가.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나.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다.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제 5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 2 조 의 성폭력범죄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 2 조제 1 항제 1 호는 제외한다) 또는 「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제 2 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본 후원회의 제명처분을 받고 3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10. 뉴스킨 코리아(주)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고 그 제재가 종료되지 아니 한 자

② 본 후원회의 상임위원이 제 1 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.

제 22 조 (상임위원의 징계)

④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의결을 거쳐 그 상임위원을 징계(해임 등)할 수 있다.

1. 법령, 후원회의 회칙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

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후원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
3.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상임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
4. 기타 상임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

② 전 항의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상임위원은 의결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.

제 23 조 (상임위원의 직무)

상임위원회는 본 후원회를 대표하고, 상임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 24 조 (대표권의 제한)

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어떠한 자도 후원회를 대표하지 않는다.

제 25 조 (상임위원의 대우)

본 후원회의 모든 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

제 26 조 (의결사항)

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
2.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후원회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
4. 상임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5.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
6.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7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본 회칙 등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제 27 조 (상임위원회의 소집 등)

① 상임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는 매년 본 회칙 제 9 조 및 제 10 조에 기재된 사항을 의결하는 때에 개최하고, 임시회는 상임위원 및 운영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제 28 조 (상임위원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)

상임위원회는 본 회칙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9 조 (의결제척사유)

상임위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상임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상임위원 자신이 후원회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

제 5 장 운영기구의 조직 및 운영

제 30 조 (운영기구)

- ① 후원회의 실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, 상임위원회 산하에 운영기구를 둔다.
- ② 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31 조 (직원)

운영기구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제 32 조 (운영기구의 구성)

운영기구는 후원회 상임위원 5 인이상 9 인 이하, 뉴스킨 코리아에서 지정하는 3 인으로 구성한다.

제 33 조 (운영기구의 역할)

운영기구는 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,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.

1. 후원금 운영에 관한 사회공헌사업 전략 수립 및 실행
2. 후원금의 관리

3. 후원회 제반 홍보 활동
4. 사회공헌 외부 자문위원의 컨설팅 반영
5. 운영기구가 심의, 의결한 사항의 실행
6. 기타 본 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6 장 상 별

제 34 조 (표창)

후원회의 건전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상임위원회가 표창 할 수 있다.

제 35 조 (징계)

- ①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 회칙 제 16 조 제 2 항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.
- ② 상임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 회칙 제 22 조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.
- ③ 징계의 범위, 양정방법 등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 7 장 회칙변경 및 해산

제 36 조 (회칙변경)

후원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 상임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 37 조 (해산 및 합병)

후원회를 해산하거나 다른 후원회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 상임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친 후 전체 회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 38 조 (잔여재산의 귀속)

본 후원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본 후원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것으로 한다.

제 8 장 보 칙

제 39 조 (준용규정)

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,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.

제 40 조 (운영규정)

본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제 41 조 (규정의 제 개정)

- ① 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 개정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② 제 1 항의 내용 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 42 조 (공고의 방법)

후원회는 연간 후원금 모금액, 결산내역, 사업실적 등을 간행물,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한다.

부 칙

- ① 본 회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※ 상기 "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 회칙" 은 2014년 12월 7일 포스 포 굿 후원회 상임위원 정기회에서 논의 결정된 후 2017년 2월 3일 상임위원회 정기회에서 수정 변경된 회칙입니다.